

##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0.11)

### 1. WTO 양자간 협의 관련

#### □ [WTO 전문가 동향]<sup>1)</sup>

- WTO 상급위원회 위원 출신인 스위스 베른 대학교의 반덴보쉬 교수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3개 소재의 수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“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차별 금지 등을 정한 (WTO의) 규범에 위반된다고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”는 견해를 제시
- 한편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정치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“차별 및 수량제한의 금지규정에서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”고 하면서, 패널 심리에서는 “조치의 배경보다는 해당 조치가 규범과 맞는지 여부가 중시된다”고 설명
- 또한 반덴보쉬 교수는 “일본은 안전보장상의 목적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GATT 규정을 근거로 (조치의 정당성을) 주장할 것”이라고 전망
- 한편 WTO 가맹국 간에는 안보상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쉽게 이용되어 무역상 예외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, 일본이 이 규정을 근거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“북한에 소재가 넘어갔다는 것과 같은 한국 기업이 적절한 무역관리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지적
- 심리와 관련, “소위원회의 판단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다. 한국과 일본 둘 중 어느 국가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양국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”고 전망
- 이는 WTO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심리가 큰 영향을 받는 것(늦춰지는 것 등)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임.

1) 「WTO元委員「適切な貿易管理怠った事実示すことが焦点」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0. 11).